

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정 창 릉
(단국대학교)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노후보장수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층보장체제

본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투고일: 2012.10.31 ■ 수정일: 2012.12.10 ■ 게재확정일: 2012.12.17

I. 서론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 연금 체제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 급여 삭감 - 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현재의 국민연금은 다층 소득보장체계에서의 1층 혹은 ‘약한 비스마르크형¹⁾’으로 변하고 있는 과도기 형태를 띠고 있다. 비버리지형 공적연금 - 기초연금 -을 운영하는 국가들보다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체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강한 압력을 받고 실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여온 것이 최근의 추세이지만(Bonoli & Palier, 2008), 한국의 경우는 서구 비스마르크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개혁과 비교하여 볼 때 개혁 시기가 제도 정착이후 바로 시작된 점과 개혁 정도가 매우 높은 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연금 개혁은 그 제도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 특징은 국가 책임의 공적연금 규모를 줄이면서 그 빈 공간을 퇴직연금이나 민영보험에 의한 노후보장이 대신하도록 했다는 점이다(Myles & Pierson, 2001; Clark & Whiteside, 2003; Ebbinghaus, 2007). 그동안 서구복지국가의 노후보장 개혁의 배경과 과정을 볼 때, 공적연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점차 힘을 잃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Hyde et al., 2007), 그 결과 개인 또는 기업 책임에 의한 노후보장이 확대되어 왔다(Pedersen, 2004).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서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지만(OECD,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공적 영역의 책임이 요구되어지기는 하지만, 이를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 수준

1) 공적연금은 비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빈곤경감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정액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반해, 후자는 빈곤경감 뿐 아니라 소득유지까지 초점을 맞추어 소득비례 형태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한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의 공적연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형은 소득비례연금이지만 그 제도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연금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Bonoli & Shinkawa, 2005).

으로 복원시키는 등의 전면적 공적책임 강화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다른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강화가 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축소로 인한 노후소득의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퇴직연금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직연금은 아직 시기적 한계와 제도적인 여러 한계 - 중간 정산 및 일시금과의 선택 등 -로 인해 아직 국민연금의 축소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연금과의 조화를 통하여 각 소득 계층별 노후보장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확대가 과연 공적연금의 축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의 축소 부문만큼 사적연금이 발전할 때, 과연 과거보다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두 제도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한계를 염두에 주었기 때문이다. Titmuss(1958) 이래로 Esping-Andersen(1996) 등 여러 사회정책 학자들은 사적연금 등 민간복지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사적연금의 발전이 기존의 사회계급을 지속시키고 여성의 빈곤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Arber, 1989; Ginn, 2003; Ginn & Arber, 1999; Sinfield, 1978).

그러나 최근의 문헌들에서는 기존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재평가의 배경에는 사적연금이 발전한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실증적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Bridgen과 Meyer(2009)에 의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관대한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보다, 사적연금 - 기업연금 - 이 발달한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경우에 오히려 연금 지출은 억제하여 재정안정을 유지 하면서 노후소득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니 사적연금이니 하는 구분은 근로세대 개인이 미래의 생산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한 대안들에 불과할 뿐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Barr, 2001; Esping-Andersen & Myles, 2007), 연금수급자 입장에서는 실질 후생 수준만 보장된다면 연금 제공주체가 공공인지 민영인지는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을 두어 제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 노후보장의 국제비교가 이루어졌고, 실질적 노후보장의 종합적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Ackermann, 1980). 이는 그동안의 제도적 논쟁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제도적 성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안정과 함께 노후보장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중간 형태로서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두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발전이며,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소득보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어떠한 조화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산정하는 등의 실증작업이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Meyer & Bridgen, 2008).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hypothetical risk biographies)’을 설정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결합한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산정하되, 이를 사회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 기준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 기준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스위스의 Ackermann이 1980년에 시도한 바 있는 일반 집단의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선진 8개국 비교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노후보장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국가들의 일반 계층을 상정하고 노후보장 수준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보장 수준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한국과 같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비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방식은 2003년부터 진행된 EU의 사적연금 연구 프로젝트 - Meyer 외(2007)가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Ebbinghaus(2011) 등의 최근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선행연구는 서구의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그들 국가들의 연금 개혁 이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적용한 바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제를 국제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

2)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와 짧은 가입기간의 문제로 나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급여 하락이 있었지만 퇴직연금도입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가입기간 문제는 배제하고 급여산식 자체의 문제에 논의를 한정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퇴직연금의 특성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개인연금(personal pension)과 함께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을 구성하는 두 제도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복지국가에서 ‘기업연금’이란 용어는 ‘사적연금’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Shalev, 1996) 기업연금은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기업연금은 집단적인 제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과 구별되며, 기업연금은 순수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명백하게 배태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 할 수 있다(Steenbeek & Van der lecq eds., 2007). 따라서 기업연금의 확대와 발전은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인연금 중심의 연금 민영화와는 어느 정도 구별이 필요하며, 기업연금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특성을 모두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그러나 복지국가별로 기업연금의 비중은 매우 다양하여, 스위스와 네덜란드처럼 기업연금이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노후소득수단인 국가들도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같이 기업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들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연금은 독립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공적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해 왔었다는 것이다⁴⁾. 공적연금의 기능이 빈곤 경감 기능에 초점을 둔 기초연금 방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소득 유지(혹은 평탄) 기능을 기업연금이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반면⁵⁾,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공적연금에서 제공하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업연금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발전이 주로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등 기초연금을 도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3) 이러한 구분 역시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DC형 기업연금의 경우는 기존의 기업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가깝다. 그러나 같은 DC형 기업연금이라 해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스위스 형과 그렇지 않은 영국 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문헌 가운데, 노후소득의 개인적 책임 증가 혹은 신자유주의적 민영연금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Pinera, 2001; Rowlingson, 2002)의 주요한 비판 대상은 집단화된 기업연금이지만 개인연금이다.

4) 역사적으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관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Rein & Wadensjö, 1997): 공적연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이전(cross over)과 공적연금의 감소가 기업연금의 증가에 의해 상쇄(offset), 그리고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동시 발전(parallel development).

5) 빈곤경감과 소득평탄은 연금의 주요한 2가지 목적이다(Barr, 2004).

우연이 아니었다(표 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국가의 연금 혼합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다. 서구 복지국가의 기준으로는,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을 채택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연금의 도입은 유보되거나 도입되더라도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에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한 국가적 현실 속에서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원이자 실직후 생계유지 수단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 이후 퇴직금 제도는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독특한 배경이 되었다(김진수, 2006)⁶⁾. 결국, 2005년 말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기업연금제도로서 도입되었으며 소득과 가입기간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소득재분배를 배제한 철저한 소득비례형태의 노후보장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1. 각 국의 공적연금 방식과 기업연금 방식

구분		기업연금 방식	
		강제형	자발형
공적연금 방식	기초연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호주
	소득비례연금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미국

자료: Behrendt(2000).

퇴직연금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대체율을(40년 기여시) 60%에서 40%로 줄이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 과연, 퇴직연금이 부재하였다면 그러한 급격한 연금급여 감소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개혁 이후 퇴직연금은 한국의 노후소득보

6)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의 8.3% 이상을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높은 기여율은 공적소득비례 연금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기업연금제도 - 퇴직연금 - 가 도입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장 체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으로 하나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어느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노후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퇴직연금의 제도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전 국민의 노후보장이 되도록 조화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시금 선택 규정 등 노후소득보장을 저해하는 요소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진수, 2006). 역사적으로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업복지 전략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Engelen, 2007). 다시 말해서, 건강 검진이나 교육 등의 기업복지처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관리 전략으로서 연금은 중요한 요소였다(Greve, 2007).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복지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은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기업복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부가급여(fringe-benefits) 기능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⁸⁾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축소는 기업연금의 제도화로 노후소득의 감소를 상쇄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상용근로자 대비 38.9%(2012년 6월)에 머무르고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다. OECD(2009)에서는 퇴직연금을 강제화한 경우에만 공적연금과 동등한 수준에서 사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OECD 국가 중 실제로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의 비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80% 이상의 높은 적용범위를 포함하는 국가는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OECD, 2009; Pearson & Martin, 2005). 퇴직연금을 강제화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사적기업연금

7) 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국민연금의 축소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공백을 퇴직연금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개혁과정에서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개혁 이후, 정부는 퇴직연금의 강제화 등의 논거로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약화를 들고 있다.

8) 물론, 기업복지와 부가급여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Greve, 2007). 그러나 보험연구원 (2011)에 따르면, 중간정산 퇴직금이 생활비와 내구재 구입 등의 지출에 60%, 부채 해결에 56.7%로 나타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성과급 등의 부가급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각각 59.1%와 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적 가입으로 퇴직연금의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떨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분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적용이 기업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⁹⁾

또한 연금의 공사 연금의 혼합에서 기업연금의 위상은 공적연금과의 상대적인 관계로부터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축소 부문을 대체하는 영역은 사실상 중간소득 이상 계층으로 한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가입 계층의 노후보장 수준을 낮게 하향조정하지만, 퇴직연금의 도입 및 확대는 소득이 높은 가입자에게 유리하여 소득 계층 간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확대와 국민연금의 제도개편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2. 선행연구

연금개혁으로 인한 실제 급여의 변화는 매우 장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미래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급여를 추정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해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개혁 전후에 강성호 외(2008), 강성호와 이지은(2010), 김상호(2004), 석재은과 김용하(2002), 박성민(2006), 전병유(2006) 등 많은 연구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미래 연금급여를 추정하여 그 급여의 적정성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한 연구는 향후 공적연금 급여의 수준을 실증하기는 하였지만, 미래 소득 추정의 어려움 등의 방법론적 한계와 노후소득이 국민연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노후소득을 추정했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

9) 사적연금이 아니라 기업연금이라 언급한 이유는, 개인연금의 경우 강제화해도 80% 이상의 적용범위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헝가리(74%), 폴란드(71.7%) 등(OECD, 2009).

10) OECD(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의 비중이 전체 노후소득 가운데서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국민연금의 성숙과 함께 그 비중은 향후 증가하겠지만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앞선 시도로서 Ackermann(1980)의 종합적 보장으로서 제도적 다양성을 극복한 노후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와 Esping-Andersen과 Myles(2007)나 Rein과 Turner(2004) 등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낡은 노후소득에 주목하고 이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집단적 제공을 기본 원리로 하는 기업연금의 경우, 일부 저소득 계층과 근로기간이 짧은 계층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은 실제 노후소득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접근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다¹¹⁾.

최근의 선진국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적연금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제공주체가 공공이든 민영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Esping - Andersen & Myles, 2007) 이러한 접근은 보다 진전된 방식으로 보인다. Ackermann(1980)에 의하여 시도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EU의 사적연금 프로젝트에서의 결과물인 Meyer 외(2007), Bridgen과 Meyer(2009)를 바탕으로 설정된 12명의 가상적 위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제 노후소득이 어떨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사회 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가상적 위험 인구집단을 동일하게 한국에 적용하되, 기존 연구들(Meyer et al., 2007; Bridgen & Meyer, 2009; Ebbinghaus, 2011)의 외국 분석과 비교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제공하는 급여 수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조화하도록 하는 발전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퇴직연금이 강제화되지 않아 이를 노후소득수단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을 강제화 하는 시점에 따라 노후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 또한 병행될 것이다.

있다.

11) 노후소득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노동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적이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source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Ⅲ. 연구 방법 및 가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Meyer 외(2007), Bridgen과 Meyer(2009)가 설정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hypothetical risk biographies)에서의 가정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비록 Ackermann의 시도가 매우 정교한 장점은 있으나 이미 발견된 체제를 비교하는 성격에 따라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한국을 포함하기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그동안 노후소득 수준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 방법은 비현실적으로 단순하고 규격화된(standardized) 인구집단을 가정하거나(OECD, 2009)¹²⁾, 수많은 가정을 기초로 패널 자료 등을 사용하는 연구(강성호 외, 2008)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이 연구 방법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일정 수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의 생애소득을 연도별로 매우 구체화시켜 이를 토대로 연금 수준을 도출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연구 방법은, 다양한 위험 노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소득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을 이해함에 있어서 Bridgen과 Meyer(2009)가 실시한 유럽 5개국의 비교연구 결과를 주요한 비교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공사 노후소득보장 급여를 검토하는 데 의미를 두며,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사적 연금이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접적인 급여 수준의 비교가 아니라 기준을 사회 시민권과 사회정의라는 2가지 기준을 대상으로 비교한다. 비교의 초점은 연금제도 산식이 제공하는 급여수준 자체에 대한 것이지,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한 근로연한의 차이가 낳는 실제 연금급여의 차이를 실증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과의 체계적인 비교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유럽 국가들과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제시되어 있는 물가상승률 등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

12) European Commission's Protection Committee 역시 가입자의 생애고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30년-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6).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는 경우 오히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빠르게 이들 국가들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40년 가까운 미래의 노후 소득을 비교하고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가정을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2003년에서 2049년까지 근로기간의 소득에 따라 연금급여를 시뮬레이션 하고 2050년(만 65세)에 지급하는 연금금액으로 평가함.
- ② 명목임금상승률은 3.9%이고, 물가상승률은 2.0%임.
- ③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6.0%이며, 연금비율(annuity ratio)은 5%임. 퇴직연금은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가입자로 한정.
- ④ 각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연도별 상세 소득 수준(실제 금액이 아니라 평균 소득의 비율로서 제시되었음).

한국의 연금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추가적 세부 내용은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010년까지의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전 직종 평균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표 2), 2011년 이후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3.9%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미래의 소득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A값의 변화, 상하한선의 변화 역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표 2. 국민연금/퇴직연금액 계산 기준 평균임금 및 A값, 상·하한선(실측 값) (단위: 원)

연도	평균임금	A값	상한선	하한선
2003년	1,651,100	1,320,105	3,600,000	220,000
2004년	1,750,421	1,412,428	3,600,000	220,000
2005년	1,887,507	1,497,798	3,600,000	220,000
2006년	2,014,265	1,556,567	3,600,000	220,000
2007년	2,127,430	1,618,914	3,600,000	220,000
2008년	2,258,684	1,676,837	3,600,000	220,000
2009년	2,270,303	1,750,959	3,600,000	220,000
2010년	2,360,466	1,791,955	3,680,000	230,000
2011년	-	1,824,109	3,750,000	230,000

주: 2011년 평균임금은 부재하며 각 항목 미래의 수치는 명목임금상승률 3.9% 적용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객년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2003-2049년까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의 산식을 사용하고 2008년부터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급여 산식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되, A값과 상·하한선은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그 동안의 실제 값들에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가입기간은 Meyer 외(2007)의 가상적 인구집단의 설정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연도를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B값 역시 해당 가입연도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1.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제외하였다¹³⁾.

표 3. 국민연금액 산정식

<p>연금산정식: $[(1.8P_1+1.5P_2+\alpha P_3)\times(A+B)]\times(1+0.05n/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α: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소득대체율을 0.5%p 씩 감소하여 2028년에 40%가 되는 계수 - P_1: 총 가입기간 중 2003~2007년까지 가입기간 비율(%) - P_2: 총 가입기간 중 2008년의 가입기간 비율(%) - P_3: 총 가입기간 중 2009년 이후 가입기간 비율(%) - n : 총 가입기간 중 20년 초과월수
--

국민연금제도에 존재하는 크레딧 제도의 경우, 출산력이 나와 있는 여성의 출산 크레딧은 적용하되,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여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¹⁴⁾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의 기여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DB 방식도 존재하지만, 외국 선행연구의 경우 DC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국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DC 방식 하에서의 보험료를 - 8.3% -을 적용하여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하였다. 즉, 가상적 인구집단들의 소득활동이 있는 시기의 임금의 8.3%를 각년도의 퇴직연금 기여액으로 설정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6.0%를 복리로 적용하여 총 퇴직연금액을 계산한 후 연금 비율(annuity ratio)인 5%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국민연

13)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할지 아닐지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과도기적 한시적 공공부조라는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2008)를 고려할 때, 2050년부터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14) 현재 출산크레딧은 2자녀일 때 12개월, 3자녀일 때 30개월, 4자녀일 때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금액과 퇴직연금액을 2050년부터 수급하는 것으로 하되, 원활한 비교를 위해 물가상승률(1.9%)을 사용하여 2010년 가치로 환산하였다¹⁵⁾.

외국과의 체계적 비교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에서의 여러 가정들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접근하였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용 여부와 도입 시기를 차등화 하여 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분석하는 정책 적용 시점 간 비교를 하도록 한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의 경우 강제화되어 있는 지를 기준으로 노후소득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기업연금이 강제화되어 있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기업연금 급여를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켰던데 반해서, 기업연금이 자발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Meyer et al., 2007). 자발적으로 기업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은 체계적으로 배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 같이 아직 공/사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액의 축소-노후소득의 공백-를 퇴직연금이 점차 대체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퇴직연금의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이 그동안 법에 의하여 강제로 하고 있는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태만 전환되기 때문에 강제화에 대한 시기를 차등화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퇴직연금이 강제화 되지 않는 경우, 둘째 퇴직연금이 201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 셋째 퇴직연금이 202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 한다¹⁷⁾.

2.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미래 노후소득수준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평균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거나 패널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비현실적으로 간단하고 표준화된 인구집단들을 설정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15) 모든 계산은 Excel로 하였다.

16) 정부는 중간정산제도를 없애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세우고 있다(2011년 3월 11일 머니투데이).

17) 시점의 설정은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도입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3가지 설정은 도입시기에 따라 노후소득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나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 설계에 초점을 둔 나머지 돌봄, 이혼 및 재혼, 장애, 실업, 직업훈련, 조기은퇴, 이민 등의 현실적인 위험들을 반영하지 못했었다(Meyer et al., 2007). 후자의 경우, 최근 패널자료가 축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과거 현재의 짧은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수많은 가정 하에서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노후소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접근 방법 대신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설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위험들을 고려하여 생애의 근로이력과 소득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표준화된 인구집단을 사용했던 기존의 연구방법보다 현실성 높은 접근 방식으로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통해 그들의 소득 수준 등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각 위험집단의 노후빈곤 및 불평등 정도를 추정한다(Meyer et al., 2007). 가상적 인구집단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9가지의 이론적 인구집단과 그 안에서 위험에 따른 세부분류를 통해 총 19가지의 가상적 위험집단을 구분된다. 이들은 3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을 통해 구성된 다양한 가족형태 및 9가지 인구집단에 속하고¹⁸⁾, 이들의 이혼, 재혼, 조기은퇴, 고용지위, 고용형태, 고용기간, 생애임금비율, 결혼지위, 자녀 수, 직종 등의 기준을 통해 19가지의 경우로 분류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면서도 19가지의 경우를 12가지로 단순화한 Bridgen과 Meyer(2009)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그 연구가 5개 국가에 대한 체계적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속성을 더 잘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은 여러 사회적 위험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 1과 2에서는 결혼/출산 이후 근로형태의 변화가 노후소득에 어떠한 차이를 낳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집단 3과 4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노후소득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각각의 특성은 <표 4>에서 요약되어 있다.

18) 한 인구 집단은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오류라기보다는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다.

표 4. 12가지 가설적 인구집단¹⁹⁾

인구 집단	성별	특성	고용 기간	플타임 기간	평균 소득	적용 사업장	기타
1	여	소매업, 조기 퇴직	39년	6년	39%	대기업	자녀 2명
2	여	소매업, 플타임 근로	42년	31년	47%	대기업	자녀 2명
3	여	공공부문, 조기 퇴직	37년	6년	42%	대기업	자녀 2명
4	여	복지부문, 적용사업장 규모 변화, 조기퇴직	37년	6년	42%	대기업, 중소기업	자녀 2명
5	여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38년	27년	37%	소기업, 가정내 사업, 대기업	자녀 2명
6	여	돌봄노동	40년	40년	22%	소기업, 가정내 사업	자녀 3명
7 ²⁰⁾	남	자동차 생산 부문	46년	46년	79%	대기업	
8	남	자동차생산 부문, 조기퇴직	37년	37년	65%	대기업, 중소기업	실직후 중소 기업노동
9	남	건설 부문	41년	41년	86%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10	남	자영사업가	46년	46년	84%	자영업	
11	남	화학부분 설비업	45년	45년	113%	대기업	
12	남	금융부문 중간관리	41년	41년	131%	대기업	

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크레딧 적용
자료: Bridgen & Meyer(2007) 요약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이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선행연구(Meyer et al., 2007)에서도 발견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실업률 차이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설적 인구집단에 대한 국가 간 동일한 설정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결

19) 가상적 인구집단에 대한 세부 설명 - 상세 소득 수준, 혼인력 등 -은 Bridgen과 Meyer(2007;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세 소득수준의 경우 부록에 인구집단 1의 상세소득 수준을 제시하였다.

20) 한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가정 역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동차 생산부문 근로자의 소득이 이렇게 낮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그대로 따랐다.

국은 동일한 설정이 낳는 비교의 용이함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근로의 확대, 조기퇴직/이직의 확대 등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설적 인구집단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고용기간 등에서 한국 현실과 괴리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국가 기초연금(BSP) 가입자 가운데 완전연금급여를 위해 가입기간(44년)을 모두 채운 사람의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이후에도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의 고령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활동계층이 20여년에 불과한 경제활동기간으로 실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원하는 계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경제활동기간의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민연금은 선진국의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모든 경제활동계층에 대하여 가능한 장기간의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적용의 조건을 확대하여 연금 수급 조건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가입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변수들을 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상정하는 것이 한국 노후보장에 대한 국제비교에 있어서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접근하였다.²¹⁾ 따라서, <표 4>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소득수준이나 직업군 설정 등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선행연구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다.

21) 대상자 가운데 여성이 전체 가설적 인구집단 중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만-, 여성 근로자들이 파트타임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가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 노후 빈곤은 공사연금의 소득대체를 부족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문제와 가입자 관리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인구집단들은 조기은퇴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49년까지 근로활동을 하며, 각 년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여 시민권적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검토한 후, 퇴직연금의 강제화 시기를 구분하여 재검토 한다.

3. 분석 기준 설정

Bridgen과 Meyer(2009)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빈곤선을 상회하는 소득을 가지되 평균소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10개의 가상적 위험 인구 집단을 택하였다. 이 중 첫 6개 집단은 전형적인 여성인구집단으로 노동시장에서 분절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part-time 근로를 하는 집단이며, 나머지 4개의 집단은 남성 집단으로 여성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 추가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남성 중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는 2개의 집단을 선별하여 총 12개의 인구집단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척도는 사회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 기준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 기준을 따르고 있다. 전자는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빈곤선을 활용한 것으로서, 소득수준이 높은 2개의 남성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집단에 대해 평균 소득의 40%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상회하는 노후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의 비중을 살펴보고 12개 인구집단의 중위 노후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의 어느 정도 - 몇 % - 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전자가 주로 결핍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는 퇴직 소득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후자, 즉 사회정의 기준은 롤즈(Rawls)의 사회정의 관점²²⁾에서 퇴직 소득 불평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2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첫째는 가장 높은 연금을 받는 사람과 가장 낮은 연금을 받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되, 측정 기준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표시된다. 둘째는 연금소득이 높은 6개 집단과 연금소득이 낮은 6개 집단을 나누어서 두 집단 각각의 중위 노후소득이 두 집단 각각의 평균 개인 생애소득에 어느 정도 비

22)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만족이 항상 최우선 상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은퇴소득에 적용해 보면, 분배방식이 불공평할 지라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은퇴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인지를 계측한다. 이는 실제 각 제도가 위험 인구집단들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설계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사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정의를 측정 하는 방식이 기존의 다양한 불평등 지표보다 우월한지 입증되지는 못하였지만, 외국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함의

3장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12명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의 적용이 아직까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두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대안 1은 퇴직연금이 강제화 되지 않아 국민연금만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대안 2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퇴직연금이 천천히 강제화 되는 경우로 최직연금의 전면적인 강제화 시기가 2025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이며, 대안 3은 국민연금에 더해서 퇴직연금이 일찍 강제화 되는 경우로 전면적인 강제화 시기가 2015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²⁴⁾. <표 5>는 각 대안별로 노후소득수준을 제시하고 이 수준이 평균임금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 것이다²⁵⁾.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노후소득 수준은 퇴직연금을 일찍 강제화 할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인구집단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 2의 경우 생애 소득수준은 평균 임금의 47%에 불과하고 직업 역시 낮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이 빨리 도입되는 경우에는 노후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 평균 임금의 40% -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인구집단 10의 경우, 생애 소득 수준이 평균임금의 84%에 이르지만, 퇴직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 종사자여서, 대안 3의 경우에도 노후 소득 수준

23)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면 그 제도는 노후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24) 퇴직연금의 강제화 시점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가설적 인구집단 다수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화 이전에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 앞 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한바 있지만, <표 4>에서의 각 인구집단의 특성과 상세소득수준(지면상 부록에서 인구집단 1만 제시)을 적용하여 2010년 물가 수준으로 계산한 것임.

인 평균 임금의 3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개인의 노후소득 수준에 있어서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 역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각 대안별 평균 임금 대비 노후소득 수준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금액	평균임금 대비	금액	평균임금 대비	금액	평균임금 대비
인구집단 1	546,547원	23%	695,217원	29%	762,504원	32%
인구집단 2	605,237원	26%	812,528원	34%	870,203원	37%
인구집단 3	549,289원	23%	723,193원	31%	780,444원	33%
인구집단 4	549,289원	23%	549,289원	23%	549,289원	23%
인구집단 5	529,720원	22%	602,046원	25%	602,046원	25%
인구집단 6	516,506원	22%	516,506원	22%	516,506원	22%
인구집단 7	739,076원	31%	1,023,607원	43%	1,181,972원	50%
인구집단 8	617,815원	26%	809,085원	34%	967,450원	41%
인구집단 9	750,691원	32%	761,900원	32%	761,900원	32%
인구집단 10	771,136원	33%	771,136원	33%	771,136원	33%
인구집단 11	854,772원	36%	1,287,600원	55%	1,518,298원	64%
인구집단 12	899,535원	38%	1,395,074원	59%	1,688,013원	72%

주: 노후소득금액은 2050년에 제공될 것을 상정한 것이며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 (2010년 평균 임금 2,360,466원(통계청))

1. 사회시민권 기준

위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사회 시민권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대안 1), 10개 위험 집단(인구집단 11, 12 제외) 가운데 상대빈곤선 - 평균 임금의 40% -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12개 전체 위험인구집단 가운데

26) 이 항목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인구집단 11, 12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중산층이어서 이들의 노후소득이 빈곤선을 초과할 것이 당연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 1의 경우 인구집단 11, 12를 포함시켜도 빈곤선을 초과하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6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80% 수준이며, 여성 가운데 중위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시민권 기준 평가²⁷⁾

구분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 수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 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여성의 중위연금
대안 1	0	65%	80%	58%
대안 2	1	80%	96%	69%
대안 3	2	82%	114%	73%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202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2), 10개 위험 인구집단 가운데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인구집단 7’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8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96% 수준이며, 여성 가운데 중위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201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3), 10개 위험 인구집단 가운데,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2가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8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114% 수준이며, 여성 가운데 중위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 6>에서 나타나듯이,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빈곤의 위험

27) 여기에서의 중위 연금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가운데 연금액이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금 수준을 말한다.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 수’는 인구집단 11, 12를 제외한 10개의 인구집단 가운데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이 대안별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나타낸 것이며,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추정연금액 가운데 연금액이 중위값에 해당되는 인구집단의 연금액이 상대빈곤선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사적연금의 특성상 퇴직 연금의 강제화로 인한 노후소득의 증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저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대안 1과 대안 3을 비교할 때 남성의 중위 연금 소득 수준은 80%에서 114%로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여성의 중위연금 소득 수준은 58%에서 73%로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를 통틀어서도 평균적으로 중위연금 소득 수준이 65%에서 82%로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의 확대에 의한 혜택이 주로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7. 외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시민권 기준 평가

구분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 수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 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여성의 중위연금
네덜란드	2	87%	141%	83%
스위스	1	74%	91%	74%
영국	1	62%	68%	60%
독일	0	74%	91%	74%
이탈리아	2	58%	67%	52%

자료: Bridgen & Meyer(2009).

외국의 연구를 나타낸 표 7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와 비교가 가능하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이 구성되는 경우(대안 1), 외국의 다섯 국가들보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노후소득이 부족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반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대안 2, 3),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는(Bridgen & Meyer, 2009) 네덜란드와 스위스에 크게 뒤지지 않는,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 정의 기준

사회시민권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한데 이어서, 사회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대안 1),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차를 상

대빈곤선의 비중으로 나타나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재분배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최고연금액을 받는 사람(평균임금의 38%)의 노후소득은 최저연금액을 받는 사람(평균임금의 22%)의 2배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금액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61%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35%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2025년에 도입되는 경우(대안 2),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차를 상대빈곤선의 비중으로 나타내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금액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61%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40%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2015년에 도입되는 경우(대안 3),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차를 상대빈곤선의 비중으로 나타내면,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금액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55%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57%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표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빨리 일어날수록 최고 연금을 받는 사람과 최저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급여의 격차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안 3의 경우에는 대안 1, 2와 달리, 낮은 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액의 비율(55%)이 고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액의 비율(57%)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일찍 발생할 경우에는 노후소득에서의 역진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강제화 되어 일부 계층의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저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한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정의 기준 평가

구분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저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고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대안 1	41%	61%	35%
대안 2	93%	61%	40%
대안 3	124%	55%	57%

<표 9>에 나타나 있는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연금과 최저연금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거나 늦게 도입되는 경우 연금액의 격차는 매우 작다. 저연금 급여 대상자들이나 고연금 급여 대상자 할 것 없이 모두, 연금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보다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다만, <표 8>의 대안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표 9에서의 이탈리아와 같이 노후소득에서의 역진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9. 외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정의 기준 평가

구분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저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고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네덜란드	182%	79%	67%
스위스	74%	75%	37%
영국	181%	43%	30%
독일	115%	48%	37%
이탈리아	222%	60%	67%

자료: Bridgen & Meyer(2009).

3. 소결

본 연구는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2050년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소득을 micro-시뮬레이션 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 만으로 노후소득이 구성되는 경우(대안 1), 연금소득의 편차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사회정의 기준), 어떠한 위험 인구집단도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시민권 기준). 이는 퇴직연금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강한) 재분배적 산식에 따라 노후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할 것이지만 그 절대적 수준은 매우 낮아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이상에게도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천천히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2), 연금소득의 양극 편차는 대안 1에서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소득의 편차는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정의 기준). 노후소득의 절대적 기준 측면에서는 하나의 인구집단만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고 남녀 인구집단 모두에게 실제 노후소득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시민권 기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일찍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3), 위험집단 가운데에서도 상위 집단의 연금수준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하위 집단의 연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역진적인 연금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사회정의 기준). 반면, 노후소득의 절대적 기준 측면에서는 두 인구집단이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고 남성이 대안 2에서보다 크게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사이의 노후소득의 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시민권 기준).

결국,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단순히 국민연금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퇴직연금이 적정 시점에 강제화 되어 실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때,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때, 외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견주어도 크게 노후소득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민연금 개혁이 노후소득의 악화를 낳을 거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퇴직연금이 적절한 보충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종합적으로 노후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강제화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퇴직연금의 도입이 강제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 계층간에 나타나는 노후소득 격차를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이 절대적으로 소득비례적 성격

을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후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실제 저소득계층은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아 퇴직연금에 의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보장은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빠르게 강제화하는 경우, 그에 걸맞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성격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활동집단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집단 3, 4, 6, 9, (10)의 경우에 자영업, 중소기업, 가족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퇴직연금 강제화로 인한 노후소득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인한 여성의 노후소득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²⁸⁾.

V. 결론

최근의 사회정책의 경향은 사적 복지와 공적 복지 사이의 전통적 경계에 대해서 재정의 (redefinition)를 시도하여 왔다(Rein & Turner, 2004; Pedersen, 2004). 둘의 경계는 모호하며,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in & Turner, 2004; Rein & Rainwater, 1986). 특히 연금 수급권은 규제, 기금, 운영을 둘러싼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공적-사적 규정(public-private labelling)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Leisering, 2003). 특히 기업연금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만일 기업연금의 기여율/급여 산식 등을 공적연금과 같이 엄격하게 고정시킨다면 이것은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과 더 유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불평등 논의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의 증가는 핵심변수가 아니다(Marier & Skinner, 2008). 실제로 사적연금이 발전한 국가들 - 스위스나 네덜란드 - 이 노후 빈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열등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Rein & Turner, 2004).

28) 사적연금의 확대가 여성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Ginn(2003)을 참고하기 바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의 안정 - 혹은 노인 빈곤 - 을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정 시기에 퇴직연금의 역할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재분배요소 강화를 통하여 기초연금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전체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조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강화가 노후소득의 불평등 - 사회정의 기준에서의 악화 - 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실증결과에서도 일부 나타난 바 있지만, 이는 Rein과 Turner(2004)의 지적처럼, 제도의 설계 혹은 운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자영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2층으로서 매칭펀드 등의 새로운 대안이 도입된다면 미래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증분석이 미래 우리나라 노후소득 수준이 서구 국가들과 비슷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거듭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가입자들의 실제 연금가입기간을 고려한 노후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간접 비교를 위해 외국 선행연구들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근로기간은 타당하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이후의 연구과제로서 시계열적 분석에 대한 접근이 남아있다. 본 연구가 2003년에서 2049년까지 근로하고 그 이후 퇴직하는, 다시 말해서 특정 세대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과 퇴직연금의 성숙으로 인한 노후소득 증가 등 미래 노후소득의 양태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분명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창률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사회복지사를 마쳤으며,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이다.
(E-mail: mymetapho@hotmail.com)

참고문헌

-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6(3), pp.75-107.
- 강성호, 이지은(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상호(2004).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연구*, 20(3). pp. 83-104.
- 김진수(2006). 퇴직급여제도의 노후보장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1). pp.287-311.
- 박성민(2006).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모형.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보험연구원(2011).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서울: 보험연구원.
- 석재은, 김용하(200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 18(1) pp.67-104.
- 전병유(2006). 국민연금의 가입자 특성과 수급부담 구조 분석 관련 가입자 D/B에 의한 연령소득곡선 모형 설정.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 Arber, S.(1989). Class and the elderly. *Social Studies Review*, 4(3), pp.90-95.
- Ackermann, W.(1980). *Soziale Sicherung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1.VW, Schriftleihe, Band 5. Bern.
- Barr, N.(2001).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hrendt, B.(2000). Private Pensions - A Visible Alternative? Their Distributive Effec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 pp.3-26.
- Blackburn, R.(2002). *Banking on Death: Or, Investing in Life: The History and Future of Pensions*. London and New York: Verso.
- Bonoli, G., Palier, B.(2008). When Past Reforms Open New Opportunities: Comparing Old-age Insurance Reforms in Bismarckian Welfare Systems, In Palier, B., Martin, C.(Eds). *Reforming the Bismarckian Welfare System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Bonoli, G., Shinkawa, T.(2005). Population Ageing and the Logics of Pension Reform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North America, *In Bonoli, G. and Shinkawa, T.(Eds).,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pp.1-23.
- Bridgen, P., Meyer, T.(2007). Private Pensions Versus Social Inclusion? Citizens at Risk and the New Pensions Orthodoxy, *In Meyer, T., Bridgen, P., Riedmuller, B.(Eds). Private Pensions Versus Social Inclusion? Cheltenham*: Edward Elgar. pp.3-45.
- Bridgen, P., Meyer, T.(2009). Social Right, Social Justice and Pension Outcomes in Four Multi-Pillar Systems.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5(2) pp.129-137.
- Clark, G. L., Whiteside, N.(2003). Introduction. *In Clark, G. L., Whiteside, N.(Eds). Pension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Redrawing the Public-Private Deb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ncialdi, P.(2006). Demography, the Cost of Pensions and the Move to Pension Fund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8(3), pp.301-315.
- Ebbinghaus, B.(2007).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Managing Interest Group Conflicts*, *In Clark, G. L., Munnell, A. H. and Orszag, J. M.(Eds).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pp.759-777.
- _____ (Eds)(2011).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ngelen, E.(2007). Changing Work Patterns and the Reorganizat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 Clark, G. L., Munnell, A. H., Orszag, J. M. (Eds).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pp.98-120.
- Esping-Andersen, G.(1996). Conclusion: Occupational Welfare in the Social Policy, *In Shalev, M.(Eds). The Privatization of Social Policy?*. Macmillan press LTD. pp.327-338.

- Esping-Andersen, G., Myles, J.(2007). Sustainable and Equitable Retirement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Clark, G. L., Munnell, A. H., Orszag, J. M. (Eds.),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pp.839-857.
- Ginn, J.(2003). *Gender, Pensions and the Life Course: How Pensions Need to Adapt to Changing Family Forms*. Bristol: Policy Press.
- Ginn, J., Arber, S.(1999). Changing Patterns of Pension Inequality: the Shift from State to Private Source, *Ageing and Society*, 19(3). pp.319-342.
- Greve, B. 2007. *Occupational Welfare*.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 Hyde, M., Dixon, J., Drover, G.(2007). Assessing the Capacity of Pension Institutions to Build and Sustain Trust: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Social Policy*, 36(3), pp.459-476.
- Leisering, L.(2003). From Redistribution to Regulation: Regulating Private Pension Provision for old age as a new challenge for the welfare state in ageing societies,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Antwerp, 5-7 May, Regina Working Paper No. 3, University of Bielefeld.
- Marier, P., Skinner, S.(2008). Orienting the Public-Private Mix of Pensions, In Beland, D., Gran, B.(Eds). *Public and Private Social Policy: Health and Pension Policies in a New Era*. Palgrave Macmillan. pp.45-69.
- Meyer, T., Bridgen, P.(2008). Class, Gender and Change: the Social Division of Welfare And Occupational Pensions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and Society*, 28. pp.353-381.
- Myles, J., Pierson, P.(2001).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In, Pierson, P.(Eds.). *The New Politics of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305-333.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Paris: OECD.
- Pearson, M., Martin, J. P.(2005). Should We Extend the Role of Private Social Expenditure,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3, Paris:

OECD.

- Pedersen, A. W.(2004). The Privatization of Retirement Income? Variation and Trends in the Income Packages of Old Age pensioner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4(1). pp.5-23.
- Pinera, J.(2001). *Liberating Workers: The World Pension Revolution*. The Cato Institute. Washington. DC.
- Rein, M., Rainwater, L.(1986). The Future of the Public/Private Mix, In Rein, M., Rainwater, L.(Eds). *Public/Private Interplay in Social Protection*. Armonk, NY: M. E. Sharpe, INC. pp.202-214.
- Rein, M., Turner, J.(2004). How Societies Mix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 Their Pension System, In Rein, M., Schmähl, W.(Eds). *Rethinking the Welfare States: Th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pp.251-293.
- Rein, M., Wadensjö, E.(1997). The Emerging Role of Enterprise in Social Polic., In Rein, M, Wadensjö, E.(Eds). *Enterprise and the Welfare State*. Cheltenham: Edward Elgar. pp.1-32.
- Rowlingson, K.(2002). Private Pension Planing: the Rhetoric of Responsibility. the Reality of Insecurity, *Journal of Social Policy*, 31(4), pp.623-642.
- Shalev, M.(1996). *The Privatization of Social Policy?*. Macmillan press LTD.
- Sinfield, A.(1978). Analysis in the Social Division of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7(2), pp.129-156.
-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6). *Current and prospective theoretical pension replacement rates*. Report by the Indicators Sub-Group (ISG) of the (SPC), 19 May 2006.
- Steenbeek, O. W., Van der Lecq, S. G.(Eds)(2007). *Costs and Benefits of Collective Pension System*. Springer.
- Titmuss, R.(1958). *Essay on 'The Welfare State'*. London: Urwin.

부표 1. 인구집단 1의 생애 상세 소득 수준

년도	연령	인구집단 1		년도	연령	인구집단 1	
		근로시간	임금수준			근로시간	임금수준
2003	18	1	0.5	2027	42	0.6	0.45
2004	19	1	0.5	2028	43	0.6	0.45
2005	20	1	0.6	2029	44	0.6	0.45
2006	21	1	0.7	2030	45	0.65	0.5
2007	22	1	0.7	2031	46	0.65	0.5
2008	23	1	0.7	2032	47	0.65	0.5
2009	24	0	0	2033	48	0.65	0.5
2010	25	0	0	2034	49	0.65	0.5
2011	26	0.5	0.35	2035	50	0.65	0.5
2012	27	0	0	2036	51	0.65	0.5
2013	28	0	0	2037	52	0.65	0.5
2014	29	0	0	2038	53	0.65	0.5
2015	30	0.5	0.35	2039	54	0.65	0.5
2016	31	0.5	0.35	2040	55	0.65	0.5
2017	32	0.5	0.35	2041	56	0.65	0.5
2018	33	0.5	0.35	2042	57	0.65	0.5
2019	34	0.5	0.35	2043	58	0.65	0.5
2020	35	0.5	0.35	2044	59	0.65	0.5
2021	36	0.5	0.35	2045	60	0.65	0.5
2022	37	0.5	0.35	2046	61	0.7	0.5
2023	38	0.5	0.35	2047	62		
2024	39	0.5	0.35	2048	63		
2025	40	0.5	0.35	2049	64		
2026	41	0.6	0.45				

주: 근로시간은 1이 전일제, 나머지는 파트타임 근로. 임금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임금
 출처: Meyer et al.(2007).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Using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Jung, Chang Lyul
(Dankook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Keywords: Old Age Income Security,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the NPS, the Occupational Pension, Multi-pillar Security Regime